

보도시점 2026. 8. 20.(목) 12:00 / 배포 2026. 8. 20.(목) 08:30
< 8. 21.(금) 조간 >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국내 LDPE·EVA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등 시정조치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주식회사(이하 ‘롯데대산석화’),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HD현대오일뱅크’) 및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이하 ‘HD현대케미칼’)가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로,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정위와 협의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저밀도 폴리에틸렌(Low-density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생산되는 합성수지로서 농업용 필름, 식품 용기, 전선 피복, 종이컵 코팅 등에 사용

**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thylene-Vinyl Acetate): 에틸렌과 비닐 아세테이트 단량체를 중합하여 생산되는 합성수지로서 신발 밑창, 글루건, 태양전지 필름, 요가 매트 등에 사용

<기업결합 개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준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HD현대케미칼을 공동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산 산단에 위치한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 2026. 6. 2.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회사

** HD현대케미칼은 2014년 HD현대오일뱅크(지분비율 60%)와 롯데케미칼(40%)이 합작 설립

*** ①HD현대케미칼의 롯데대산석화와와의 합병, ②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것이 본 건 신고대상 기업결합임

**** NCC(Naphtha Cracking Center) : 원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 등을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

<심사 경과>

공정위는 2025. 11. 26.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복잡하고 광범위한 관련 상품시장 현황(20개 석유화학 제품(불임 1) 생산·판매·수출입 등)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와 HD현대케미칼이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어 따라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 제9항)이며, 당사회사는 합병 계약을 체결한 후 2026. 6. 15. 정식 신고함

<심사 결과>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과점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사업자 간 가격 등에 관한 협조가 용이해지고, 저수익 품목 생산 중단 및 가격 인상 발생 가능성이 있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이번 결합으로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과점적 구조가 심화된다. 경쟁사업자 수는 기존에 4개(한화, LG, 롯데, HD현대)에서 3개(한화, LG, HD현대)로 감소한다. 결합 후 생산능력 기준으로는 3사가 약 50:25:25의 비율로 시

장을 점유하게 되며, 판매량 기준으로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초과 (LDPE 82%, EVA 95%)하게 된다.

나아가,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사업자들은 경쟁사의 생산능력, 국제 가격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LDPE와 EVA는 범용제품으로서 상품의 동질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업자 간 가격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질 우려가 높고, 이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와 같이 공급과잉이 문제되었던 1990년대에 국내 LDPE 시장에서는 담합이 10여년간 지속된 전례*가 있다. 또한, 현재 기업결합 심사 중인 여수 1호 건이 계획대로 될 경우 복수의 합작법인 간 지분연계가 발생할 수 있어**, 본 건 기업결합 후 경쟁사업자 간 가격 등 협조가 이뤄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 공정위는 2007년 12월, 호남석유화학(주)(現 롯데케미칼) 등 7개 사업자의 LDPE 판매가격 담합('94.4월~'05.4월)을 적발하고 과징금 541억 7,500만원을 부과

** 롯데케미칼은 한화솔루션, DL케미칼, 여천NCC와 사업재편(여수 1호)을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될 경우 롯데케미칼은 여천NCC를 한화솔루션, DL케미칼과 공동 지배하게 되고, 여천NCC는 현재 한화솔루션이 영위하는 LDPE 및 EVA 사업을 양수하게 된다(붙임 2).

또한, 본 건 기업결합은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해오던 기존 사업자(롯데케미칼)와 신규 진입자*(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임에 따라, 신규진입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던 경쟁압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HD현대케미칼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 해오던 사업자여서 경쟁 소실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욱 우려된다.

* HD현대케미칼은 2021년 말부터 에틸렌, 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판매하기 시작함

구체적으로, 결합 후 당사회사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저수익·저가 그레이드* 생산·공급을 중단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제품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고, 전반적인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그레이트(Grade): 밀도, 용융지수 등 물성과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세부 제품 규격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로서 당사회사가 일부 그레이트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대체 거래선을 찾기 어렵다. 시장에 공급자가 3개뿐이어서 애초에 대체거래선이 한정적일뿐더러, 납품처의 스펙 지정으로 특정 제품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경우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경쟁사들의 설비 가동률이 이미 95~100%에 육박하는바, 당사회사가 공급을 중단한 그레이트를 경쟁사가 증산하거나 신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시정조치>

공정위는 위와 같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가격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하고*, 본 건 기업결합 당시에 생산 중이던 모든 그레이트의 LDPE·EVA 제품군에 대하여 국내 수요자의 요청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상호 간 또는 계열회사 등을 통하여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민감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을 금지하였으며, 사업재편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전직하였던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시정명령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수출가격이 직전 3개월 대비 인상·동결되는 경우에는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하고, 인하되는 경우에는 국내가격 인하율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하여야 함

참고로,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에 따라 당사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결합의 당사자인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위는 이를 참고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3조의2)

<상생협력>

한편, 이번 석유화학업계의 위기로 협력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로,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은 추후 공정위와 협의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제1호 기업결합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산업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내 LDPE·EVA 시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나가는 한편, 여수 1호 등 이어지는 석유화학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본 건 관련 제품 현황

<붙임 2> 대산 1호 및 여수 1호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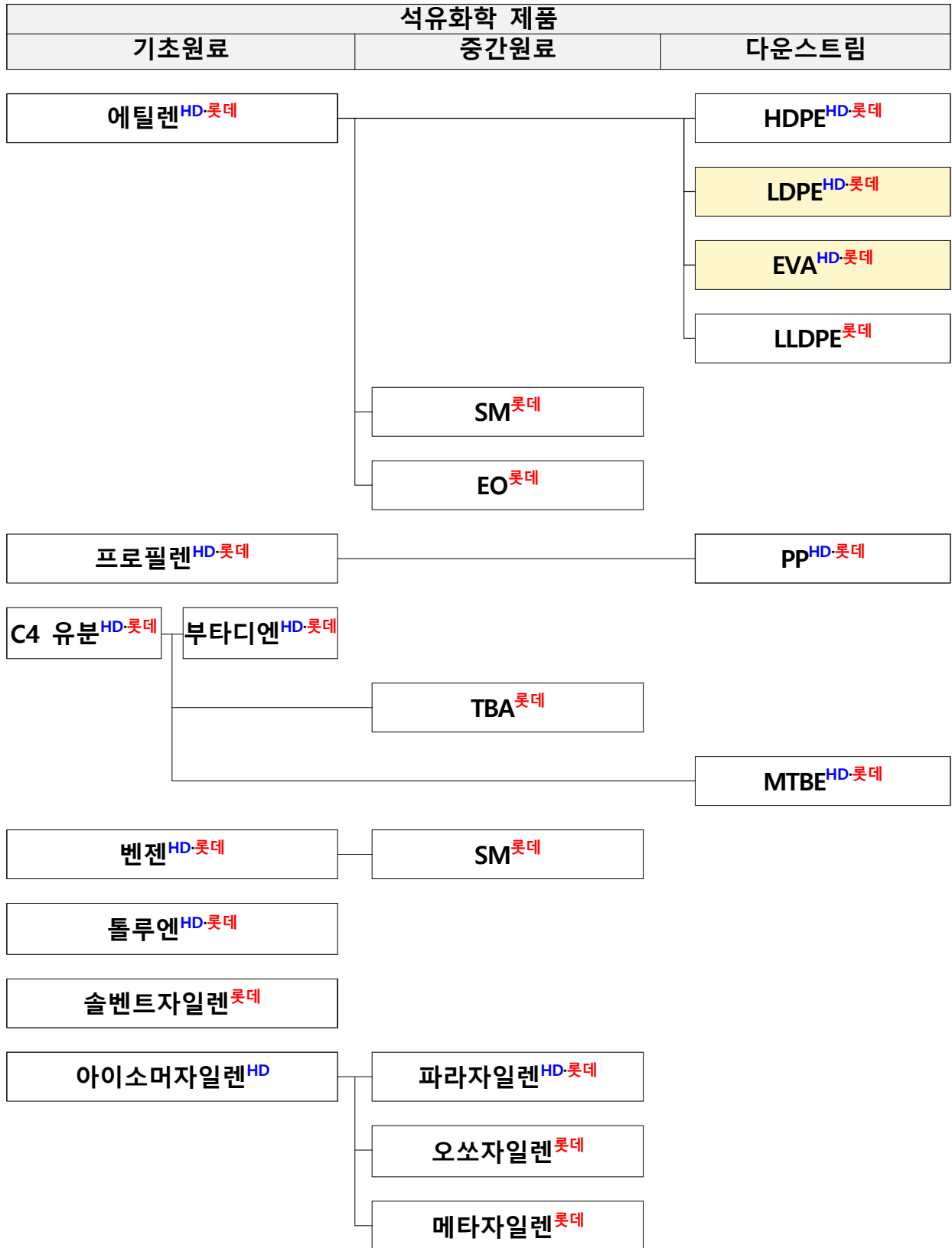
<붙임 3> 기업결합 심사 세부 내용

<붙임 4> 결합당사회사 일반현황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국제기업결합과	책임자	과 장	장주연	(044-200-5087)
		담당자	사무관	김주연	(044-200-5088)
			사무관	안주현	(044-200-5088)
			조사관	권현섭	(044-200-5091)

붙임 1

본 건 관련 석유화학 제품 현황



* : 집중 검토대상 시장

※ 석유화학제품 외에 정유제품 3개(나프타, 부탄, 프로판)도 본 건 기업결합 관련 상품

붙임 2

대산 1호 및 여수 1호 구조도

□ (대산 1호*)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롯데대산석화) 간 통합으로, 결합 후 HD현대케미칼을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공동 지배

* '25.11.26. 사업재편계획 및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 → '26.2.25 사업재편계획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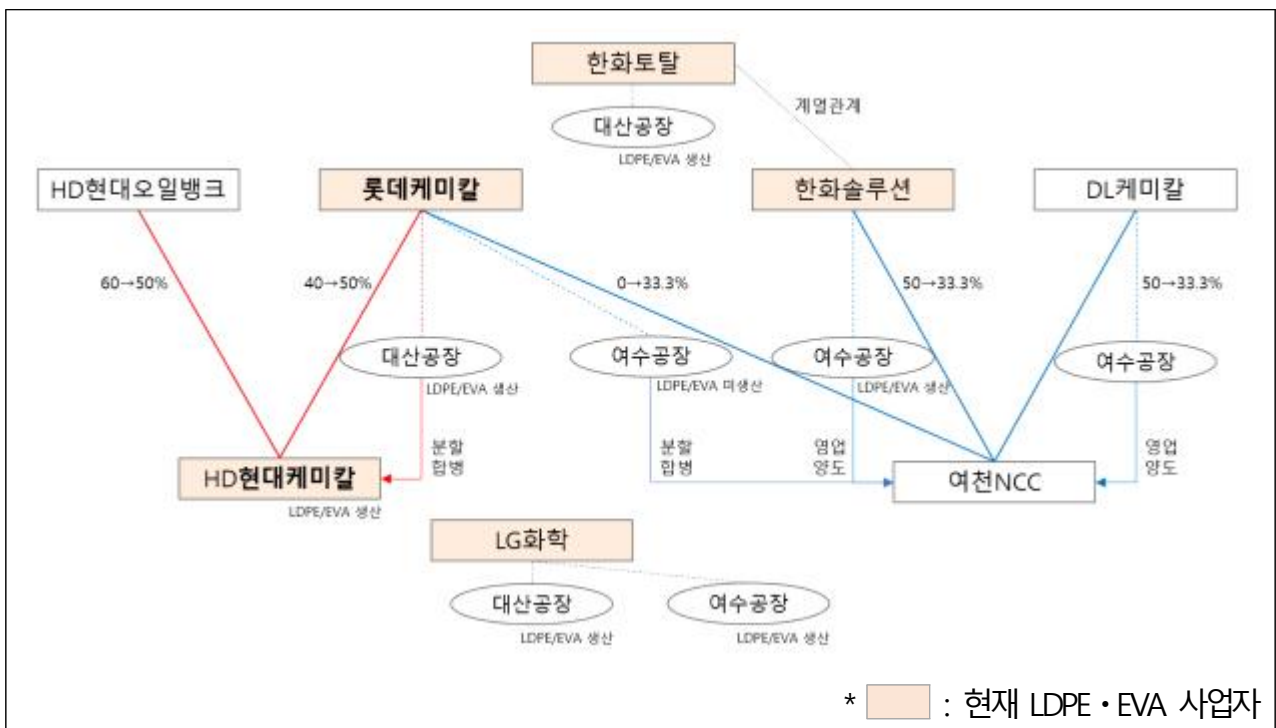
○ 기존에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영위하던 LDPE, EVA 사업을 합병준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이 통합·운영하게 됨

□ (여수 1호*) 롯데케미칼 여수 기초소재 사업, 한화솔루션 여수 폴리에틸렌 및 석유수지 사업, DL케미칼 폴리에틸렌 사업 및 여천NCC 간 통합으로, 결합 후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를 공동 지배

* '26.3.20. 사업재편계획 및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 → '26.7.20 사업재편계획 승인

○ 한화솔루션이 양도하는 폴리에틸렌 사업에는 LDPE, EVA 사업이 포함 (롯데케미칼이 여천NCC에 통합하는 사업에는 LDPE, EVA 사업 없음)

○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LDPE, EVA 사업을 영위하는 HD현대케미칼과 여천NCC가 롯데케미칼을 매개로 지분연계됨



1. 기업결합 개요

□ (결합내용)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 대가로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 취득

* 2026. 6. 2.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회사

○ 결합 후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며 공동 지배

□ (결합사유) 설비가동률 제고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회복, 유틸리티 공유 및 중복 운영 조직 효율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등

2. 관련시장 획정 및 결합유형

□ (상품시장) 제품별 기능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총 12개 상품시장 획정

연번	제품	롯데케미칼 측	HD현대케미칼 측
1	에틸렌	○	○
2	프로필렌	○	○
3	C4유분	○	○
4	아이소머자일렌	X	○
5	부타디엔	○	○
6	HDPE	○	○
7	LDPE	○	○
8	EVA	○	○
9	EO	○	X
10	PP	○	○
11	TBA	○	X
12	메타자일렌	○	X

□ (지역시장) 공급자·수요자의 전국적 분포, 낮은 수입 비중,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간 차이 등을 고려하여 국내 시장으로 획정

□ (결합유형)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8개 및
수직결합(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8개

- 수평결합 : 에틸렌, 프로필렌, C4유분, 부타디엔, HDPE, LDPE, EVA, PP
- 수직결합 : 에틸렌-HDPE, 에틸렌-LDPE, 에틸렌-EVA, 에틸렌-EO,
프로필렌-PP, C4유분-부타디엔, C4유분-TBA,
아이소머자일렌-메타자일렌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수평결합

1) LDPE 및 EVA : 경쟁제한 우려 있음

□ (시장집중도) 경쟁사업자의 수가 4개에서 3개로 감소하여 과점적 시장 구조가 심화됨

- 생산능력 기준 3사가 50:25:25 비율로 점유하며, 판매량 기준으로도 3사 합산 점유율이 75% 초과(LDPE 82%, EVA 95%)

□ (협조효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협조효과 우려가 높다고 판단

* 기업결합으로 경쟁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조를 통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지는 효과

- 경쟁사업자 수가 4개에서 3개로 감소함에 따라 협조가 용이해짐
- 시장정보지, 거래처 등을 통하여 경쟁사 간 생산능력, 가격 등 파악 용이
- 범용제품으로서 제품 차별화 정도가 낮고 동질성이 높으며, 시장 전체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인 편
- 현재와 시장상황(공급과잉)이 유사한 시기('90년대~'00년대)에 장기간 가격·생산량을 담합하였던 전력
- 동시다발적인 공동의 사업재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수 1호가 계획대로 될 경우 롯데케미칼을 매개로 합작법인 간 지분연계 발생

□ (단독효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단독효과 우려가 있다고 판단

*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생산량 감소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지는 효과

○ 기존 사업자(롯데케미칼)와 신규 진입자(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으로, 신규진입으로써 새롭게 창출되었던 경쟁압력이 제거되는 효과

- 특히, HD현대케미칼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 해오던 사업자여서 경쟁소실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욱 우려

○ 결합 후 당사회사가 저수익·저가 그레이드 생산 중단 시 시장에서 제품 다양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간접적 가격 상승도 우려

- 공급자가 소수(3개)인 상황에서 구매자(중소기업)은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렵고, 특히, 납품처의 스펙 지정으로 구매선 전환이 어려움

- 경쟁사들 또한 설비 가동률이 95~100%에 육박하여 당사회사가 생산 중단하는 그레이드를 대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2) 나머지 6개 수평결합 : 경쟁제한 우려 없음

□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하는 점, 결합 후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 우려 미미

나. 수직결합 : 경쟁제한 우려 없음

□ 기초유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자가소비 비중이 높고, 당사회사 외에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 다운스트림 제품 시장에서 대부분의 생산자가 수직계열화되어 있고, 당사회사 점유율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 낮음

4. 시정조치 : 행태적 조치

□ (가격 조치) LDPE·EVA 수출가격이 직전 3개월 대비 인상·동결되는

경우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하고, 수출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국내가격 인하율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함

□ (공급 조치) 국내 수요자들에게 LDPE·EVA를 공정·합리·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하고, 결합 당시 생산 중이던 모든 그레이드에 대하여 국내 수요자로부터 공급 요청을 받은 물량을 공급함

□ (정보 교환 금지) HD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상호간 및 정보차단 대상자*와의 LDPE·EVA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민감정보의 제공·공유를 금지함

* 다른 피심인의 계열회사 및 다른 피심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 중 LDPE·EVA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회사

□ (임직원 겸임 금지)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상호 간 또는 상대방 계열회사 중 LDPE 및 EVA 사업 수행 계열회사와의 임직원 겸임을 금지함

□ (인사 제한) HD현대케미칼로 전직하였던 임직원이 롯데케미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일부터 1년간 LDPE·EVA 관련 부서에 배치 금지 및 LDPE·EVA 사업을 수행하는 계열회사에 파견 금지

□ (교육 등) LDPE·EVA 담당 임직원에게 대하여 시정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경쟁민감정보 비유출 서약서 징구

□ (기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연장 가능

붙임 4

결합당사회사 일반 현황

(기준: 2025년 말, 별도재무제표, 단위: 백만 원)

구분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롯데대산석화*		
사업내용		석유화학 기초원료 및 유도품 제조·판매		석유화학 기초원료 및 유도품 제조·판매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재 무 상 황	자산총액	17,778,815		6,135,842		1,939,115		
	(기업집단)	(150,146,800)		(88,719,869)		(1,939,115)		
	매출액	11,912,607		7,220,128		0		
	(기업집단)	(65,797,572)		(76,791,296)		(0)		
주주 구성		주주		비율	주주	비율	주주	비율
		특 수 관 계 인	롯데지주(주)	25.31	HD현대오일뱅크	60	롯데케미칼	100
			롯데물산(주)	20.00				
			LOTTE Holdings Co., Ltd.	9.19				
			기타 특수관계인	0.08	롯데케미칼	40		
		기타		45.42				
		합 계		100	합 계	100	합 계	100

* '26. 6. 2. 물적분할로 신설된 회사로, 재무현황은 분할 당시 기준